

① 해외어장 자원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장 고경만 사무관 이은재	044-200-5360 044-200-5363

I.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해외어장·어종을 개척·개발하기 위한 자원조사 지원
- 국제수산기구에서 결정·채택한 자원관리보존조치의 이행 및 자원관리보존 조치 채택을 위한 과학조사·시험연구에 참여하는 자에게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해외에서의 해양수산생물자원 확보 촉진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해외수산 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평가·분석결과를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등에 적극 활용하여 대상수역 생산량 증대에 기여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어업생산량(천톤)	106.8	98.8	120.8	94.8	101.0	다음해 1월 20일경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생산량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750	1,750	1,750	1,750
- 국 비	750	1,750	1,750	1,750
- 자부담	-	-	-	-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등을 수행하려는 자로서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3조 제10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어업인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 (사업자격)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등을 수행하려는 사업수요자 중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자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 선정 제외 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시행년도 직전 3개년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불법어업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36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시행년도 직전 3개년 이내에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2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교부 결정 취소 및 제재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 및 벌칙 부과
- 사업기간동안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불법어업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36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기간동안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2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해외어장 자원조사, 국제수산기구 관할구역 등 과학조사,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및 시험연구 사업에 참여하는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어장 자원조사, 국제수산기구 관할구역 등 과학조사,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및 시험연구 사업 참여 선박의 소요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정액보조)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간 동안 「원양산업발전법」 또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지한 뒤 사고 원인 조사, 수색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사고 관련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국제항해 및 기항을 위한 어선검사 이행,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안전사고의 원인이 사업대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인 경우,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해외어장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예방 조치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및 조업국 어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자원조사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준하는 어선위치 추적장치(이하 “VMS”)를 장착하여야 하며, 조업기간동안 VMS의 전원이 켜져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함
 - 또한 조사일수의 20%이상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옵서버를 승선시켜야 하고 조사결과 보고 시 옵서버 레포트를 첨부해야함
 - 국가간 어업협정 등에 따라 별도의 감독체계가 갖추어진 경우 옵서버를 승선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기간 : 2024.1.1~12.31.

- 총소요일은 왕복 항해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자원조사에 소요된 기간을 말함
- 조업일자는 1일에 1회 이상 투·양망이 이루어진 날을 말함

○ 지원한도 :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비에 따라 최대 7억원 까지 지급 가능

사 업 비	지원금액(한도)
6억원 미만	최대 2.0억원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최대 3.5억원
12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최대 5.0억원
24억원 이상	최대 7.0억원

○ 지원금액은 자원조사기간 중 발생한 어업비용(이하 “실소요비용”)에 근거하여 지급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배정한 배정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실소요비용이 계획 대비 증가한 경우라도 배정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예시 (사업계획서 상 제출사업비) 7억원 → (배정금액) 3.5억원
(최종사업비) 20억원 → (지원금액) 3.5억원 내

- 실소요비용이 계획 대비 적은 경우, 실소요비용의 30%를 지원

* 예시 (사업계획서 상 제출사업비) 7억원 → (배정금액) 3.5억원
(최종사업비) 5억원 → (지원금액) 1.5억원 내(최종사업비 5억원 x 30%)

○ 사업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의 조업 일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을 요청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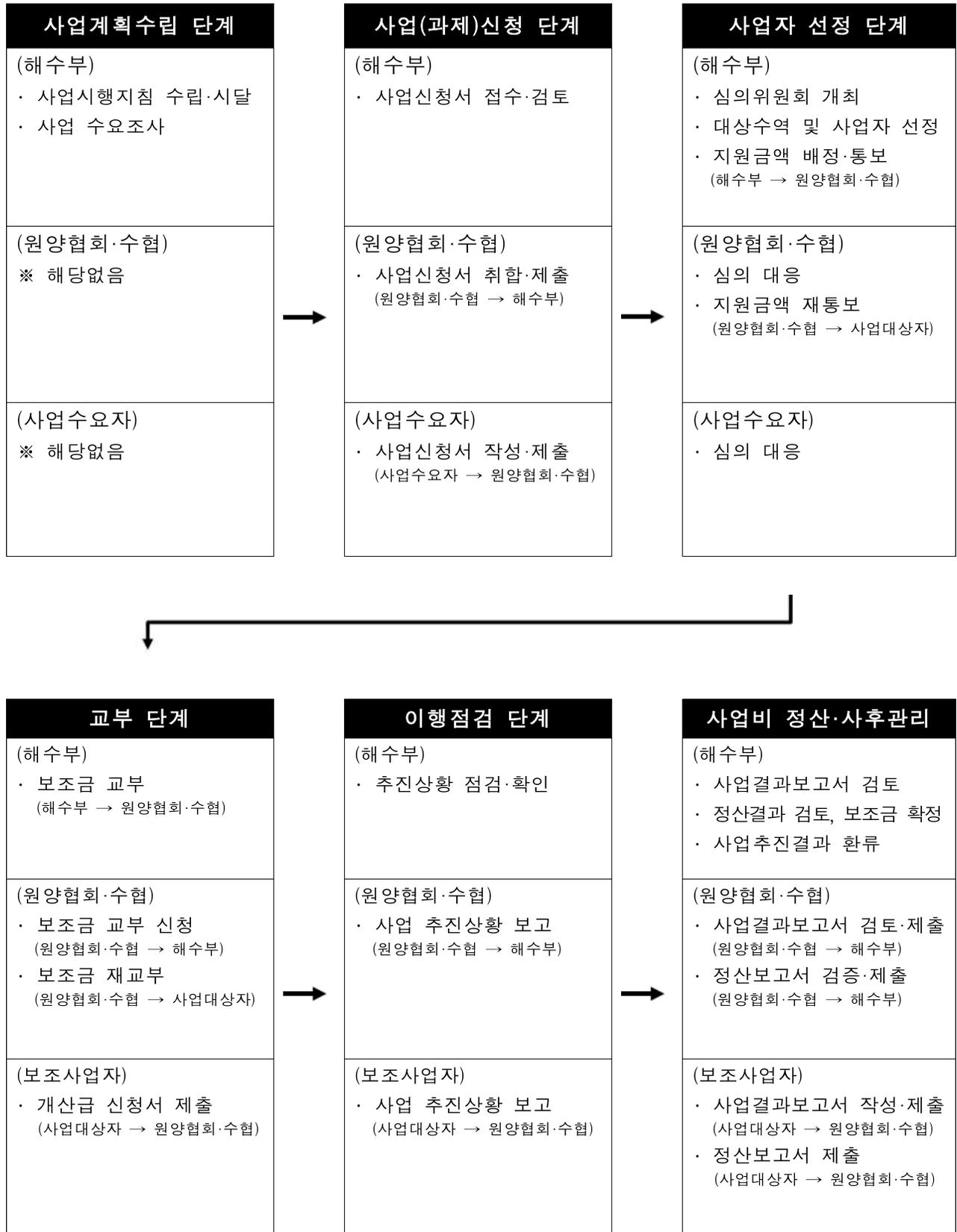
- 외국어로 되어있는 증빙서류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외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받거나 현지공관을 통해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출항 전 선박 수리비, 선용품, 어구, 유류비 등 지출을 위한 개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산금은 [별지 8호 서식]내 “직접 어로비용”의 3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또한, 개산금은 배정 통보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통보('24년 2월)
- 사업 수요조사 알림('24.2월)

3. 사업(과제)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매년 사업자를 공모하여 원양협회와 수협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음

원양협회·수협

- 원양협회와 수협은 사업수요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수요자

- 수요조사 기간 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양협회 또는 수협에 제출
 - 사업신청서 내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 조업 계획 및 예상 소요경비,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설치현황, 예상 어획량 및 판매수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4. 사업자선정 단계

《대상수역 및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사업자 선정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수산정책관으로함
- 위원은 어업·어선·국제협약·해사 등 관련 업무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원양산업과장이 됨
- 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사업수요자의 사업계획서 및 동 계획서 발표 등을 듣고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서식) 70점 이상 득점자 중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자원조사 수역이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어업협정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다만, 정부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수역은 그러지 아니함
- 평가는 ① 어장성(자원분포, 어획량 등 자원적 측면/가능성), ② 과급성(타 업계의 진출가능성), ③ 안정성(장기적인 상업조업의 가능성), ④ 경제성(예상 조업 경비의 상대적 비교), ⑤ 시급성(현 관련업계의 현안사항 및 국제규제 대응 적정성) 등 평가요소별로 20점 만점(좋은 20~16, 보통 12, 나쁨 8~4)으로 평가

《사업배정》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원양협회와 수협으로부터 수정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액 배정·통보
- 계획서 수정이 없는 경우 사업(과제)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액 배정·통보

원양협회·수협

- 원양협회·수협은 사업대상자에게 수정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 (필요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수정 계획서를 원양협회·수협에 제출

5. 교부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원양협회·수협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원양협회·수협

- 원양협회·수협은 선정위원회 결과 및 지원금액 배정을 통보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해수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원양협회·수협은 해양수산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재교부
 - 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 서식] 내 직접어로비용의 30% 및 배정금액 70% 이내로 교부할 수 있음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개산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원양협회·수협에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시험조업을 중단하거나, 자원조사 시 시험조업 통제에 불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각종 보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고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6. 이행 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사업중도포기서, 사업변경 요청서를 검토·승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반납 조치

원양협회·수협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포기서 또는 사업변경 요청서를 검토하여 해수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사업비 반납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조업일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월 1회 원양협회·수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점검 시 협조하여야 함
 - 다만, 전자조업일지로 보고하는 경우 조업일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중도 포기서를 작성하여 원양협회·수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시험조업이 포함된 경우 “[별표2] 시험어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간동안 읍서버를 승선시킨 경우 읍서버 보험에 가입해야 함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한국소재 보험회사에 읍서버 임금기준으로 해외근로자 재해보장 보험, 직급 전용상품으로 보장금액 250백만원 이상)

7.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사업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원양협회·수협에서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확인

원양협회·수협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해수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조업 수역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별지 제11호 서식), 옵서버 레포트,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양협회·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양협회·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원양협회·수협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정산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교부 확정서(별지 제15호 서식) 통지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 등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삭감비율 : 1회 20%이내, 2회 30%이내, 3회 50%이내

원양협회·수협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양협회·수협에 제출
 - 보조금 지급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어선고장, 어구파손 등과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실질적인 시험조업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조업 전체일수에서 시험조업에 참여한 해당 일수의 비율을 사업비에 적용하여 정산함. 다만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표1】 지원 인정 기준

<지원 인정 기준>

항 목	내 용
어구비	○ 어구의 신규구입 및 수리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집어 등의 구입비
유류비	○ 어선운용을 위한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의 실제 사용량 - 윤활유는 연료유의 1% 범위내에서 인정 - 해외구입시 현지 구입가격을 적용
선박수리비	○ 선체, 기관, 선박기기의 관리·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포장비	○ 어획물 포장에 필요한 어상자, 비닐 등 식품용 포장재
선용품비	○ 조사사업 기간중에 필요한 최소물품 * 전구, 청소용구, 붓, 식도 등 선박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등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제물품 구입비 - 수입품목은 신용장(L/C) 가격, 해외구입품은 현지가격, 국내구입품은 시중가격적용
후생비	○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코로나 검사비 등 복지 비용
보험료	○ 어선 보험료 및 공제, 어선원 보험료 및 공제 등 보험료(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
주부식비	○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비
선원급여	○ 대상선원은 어선검사증서상 승선 선원 수(실 승선원) ○ 월급여는 출어선의 선원근로계약 임금 지급기준 적용
운반비	○ 어획량 운반 및 어구·선용품 등의 운반비
읍서버보험료	○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료 전액

* 사업기간동안 발생한 내용에 한해 인정

【별표2】 시험어업자 준수사항

< 시험어업 >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시험조업이 포함된 경우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참여 선박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읍서버가 승선할 경우 사관급에 준한 대우 및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참여 선박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읍서버의 협조요구(통제)에 따라야 함
- 참여 선박이 여러 척으로 시험조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1척을 지휘선으로 지정하고 지휘선 선장의 통제하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 지휘선 선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또는 읍서버의 시험조업과 관련된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기간 동안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다른 조업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요청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적 이용 및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어획물 처리 >

- 사업에 참여한 선박이 시험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유로 함
-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읍서버가 어종별 생물학적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육상에서 전문가의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 일일 어획실적 보고 >

- 사업대상자는 일일 어획실적을 매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험조업시 준수사항 >

- 시험조업 시에는 국제수산규범과 시험조업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등의 자원보존관리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생태계가 확인되는 수역에서는 저층조업을 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양어업활성화(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원양어업활성화(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그 밖의 사업자 선정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계획서

2024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계획서(서식)

수신 :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Tel : 044-200-5364, FAX : 044-200-5379, E-mail : limjr@korea.kr)

발신 :

대상수역	* 경위도 또는 해구 등으로 명시(도면 첨부)		
대상어종	* 조사대상 주어종 및 부수어종으로 구분 명시		
조사시기	* 주 조사시기(월단위) 명시		
조사필요성	* 조사요청 배경, 향후 기대효과		
조사방법	* 조업여건, 어구, 어법, 타국조업동향, 생산통계자료 및 조사과정시 유의사항 등 면수에 제한없이 가급적 상세히 기술 - 사업추진계획 등 참고자료 첨부 ○ - ○ - ○ -		
정보제공업체명 (또는 개인명)		전화번호 (fax)	
주소		E-mail	

소요경비 산출

항 목	지원기준	소요경비
계		
○ 어구비	○ 어구의 신규구입 및 수리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 집어 등 구입비	
○ 유류비	○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의 실제 사용량 - 윤활유는 연료유의 1% 범위내에서 인정	(1) F.O ① 조업 $KL \times H = KL$ ② 항해 $KL \times H = KL$ ③ 체항 $KL \times H = KL$ ④ 총계 $KL \rightarrow$ 천원 (2) L.O 및 잡유 $KL \times 1\% =$ 천원
○ 선박수리비	○ 선체, 기관, 선박기기의 관리·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및 외부 수리대금	
○ 포장비	○ 어획물 포장에 필요한 어상자, 비닐 등 식품용 포장재	
○ 선용품비	○ 조사사업 기간중에 필요한 최소 물품	
○ 의약품비	○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코로나 검사비 등 복지 비용	
○ 보험료	○ 어선 보험료 및 공제, 어선원 보험료 및 공제 등	
○ 주부식비	○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매식비 지급단가(7,000원/인·식) 적용	$H \times 名 \times \chi H =$ 천원 * 1인 1끼니당 7,000원씩 계산하여 계획서 작성
○ 선원급여	○ 대상선원은 어선검사증서상 승선 선원 수(실 승선원) ○ 월급여는 출어선의 선원근로계약 임금 지급기준 적용	
○ 운반비	○ 어획량 운반 및 어구·선용품 등의 운반비	
○ 오피서버보험료	○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료	

※ 소요경비의 “항목” 및 “지원기준” 은 수정하여서는 아니됨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설치현황

■ 선사정보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부서명		이메일주소	
VMS ID		비밀번호	
주 소			

■ 어선정보

IMO번호		호 출 부 호				
선 적 항		선박 등록번호				
선명(한글)						
선명(영문)						
국 적	(외국적 경우 BBC-HP 여부 기입)	선 종				
총톤수		정기구분				
※ 선박위치정보 단말기 통신망(복수기입 가능)						
통신망 단말기정보	AIS	Inmarsat-C	Argos	Orbcomm	Global Star	TRS
통신번호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명						
단말기 제조번호						
IMN No						
※ 선박 교신(전화)용 통신망						
전화번호	통신망			모델명		
<i>871-***-***-*** 작성예</i>	<i>Inmarsat-A 등 작성예</i>			<i>MIN-M, ***** 등 작성예</i>		

2024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대상수역 선정 평가표

순서	대상업체	대상수역	총계	어장성 (20점)	파급성 (20점)	안정성 (20점)	경제성 (20점)	시급성 (20점)
1								
2								
3								
4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20점 만점으로 평가(좋은 20~16, 보통 12, 나쁨 8~4)

20 . . .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성명(명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주) '8. 보조사업 수행 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의 지출 항목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00%

○ 사업내용:

예산과목: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보조금 교부조건(예시)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

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자명 :

2. 주소 및 성명

주 소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금 액			
부담율(%)			

6. 교부신청액

(단위 : 천원)

배정통보금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신청액	계

7. 지급 사유 :

8. 첨부서류 : 1. 자금집행계획서
2. 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위와 같이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붙임1] 자금집행계획서

(1) 직접 어로비용 :

항목	금 액	산출내역
(1) 어구비		- (보조금) - (자부담)
(2) 유류비		- (보조금) - (자부담)
(3) 선박수리비		- (보조금) - (자부담)
(4) 포장비		- (보조금) - (자부담)
(5) 선용품비		- (보조금) - (자부담)
(6) 의약품비		- (보조금) - (자부담)
(7) 보험료		- (보조금) - (자부담)
(8) 주부식비		- (보조금) - (자부담)
(9) 선원급료		- (보조금) - (자부담)
(10) 운반료		- (보조금) - (자부담)
(11) 읍서버경비		- (보조금) - (자부담)

[붙임2] 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1. 보조사업 계획

- (1) 출항지 : 0000 000항
- (2) 출항일 : 년 월 일
- (3) 조업수역 : FAO 00 수역
- (4) 입항일 : 년 월 일
- (5) 시험조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조업 기간 일)

2. 운항 계획

운항별 \ 조업수역	FAO 00	FAO 00
항해일수		
실조업일수		
피항일수		
어장이동		
중간기항일수		
총 소요일		

3. 생산 및 판매계획

선명	어종	판매단가(원)	생산량(톤)	금액(원)
00호	오징어	KG/0,000	000	0,000,000
계			000	0,000,000

4. 손익계산

(단위 : 천원)

선명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소계	FAO 00	FAO 00		소계	FAO 00	FAO 00
00호	어획고				직접어로비			
					간접어로비			
	보조금				노무비			
	합계				합계			
	손익							

【별지 제9호서식】 조업일지

조업일지

조업일자:		선명: 어선표지판:		선박등록번호(IMO):	선박호출부호:	항차번호:								
		조업허가장번호:		어구명칭:			어구그물의 최소크기(mm):							
조업 일련번호	어구 순번	조업시간		조업좌표		투망/양망 순번으로 어구의 수	어종별 어획량(kg) (어획중량/바다방류 중량)						총어획량 (kg)	
		어구설치시작(투망)	어구설치종료(양망)	어구설치시작(투망)	어구설치종료(양망)		(빈칸에 어획된 어종을 기입, 총 조업 시간 동안 새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작성된 어종 기입 위치 유지)							
							오징어	복어						
						1	2	3	4	5	6			
어구투망														
어구양망														
수산자원, 어류 및 다른 수산물의 선적, 하역 또는 전재 정보						일간 어획량(kg)								
선적, 하역 또는 전재 장소(항구, 좌표)		하역(선적) 선박명(선박표지판), 인수-인계 서류번호 및 종류		하역(선적) 선박등록번호(IMO)		하역(선적) 선박호출부호		조업시작일부터 어획량(누계)(kg)						
								수산자원, 어류 및 다른 수산물(원어환산)의 하역(전재) 어획량(kg)						
수산자원, 어류 및 다른 수산물의 선적, 하역 또는 전재 시, 참석한 권위있는 기관 책임자의 성명, 서명, 직인						수산자원, 어류 및 다른 수산물(원어환산)의 선내 잔량(kg)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어장 자원조사 결과보고서

<해외어장 자원조사 결과보고서>

- 1. 소속회사 :
- 2. 어 선 명 : (톤수 : 마력 :)
- 3. 선 장 명 :
- 4. 자원조사일 : 20 . . . ~ . . . (일간)

출항일	출항지	조사기간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 5. 어종별 어획량 :

- 붙임 : 1. 자원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경제성분석 자료 1부

20 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붙임과 같이
자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

(인)

조업실적(연승, 채낚기, 통발, 외줄낚시 등)

조업실적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톤)		
	조업 위치	투승 시간 (H:M)	양승 시간 (H:M)	낚시 (통발) 갯수	어획 수심 (M)	표층 수온 (℃)	어종		어획 소계 (미/kg)
어획소계									

조업결과

(1) 어장성

(2) 어장특성

(3) 향후 대책

참고자료 (사진 자료 등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경제성분석 자료

<경제성분석 자료>

1. 어업수익 관련 자료

- ① 시험조업 기간 동안에 어획한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량
- ②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경로
- ③ 가공 가능한 방법 및 예상가격

2. 어업비용 관련 자료

- ① 시험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기입
- ② 시험조업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 ③ 1년 동안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비용

※ 단, 서식에서 빠진 비용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기입

□ 자원조사기간 중 발생한 어업비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시험조업기간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저장대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임금 및 일반관리 비	선원 임금	고정급	
		성과급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운반비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 1년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어업비용

항 목		금 액	
		산출 근거식	1년 조업비용 (환산)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저장대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항만·대리점비		
임금 및 일반관리 비	선원 임금	고정급	
		성과급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운반비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시험조업 생산량

어획일시	어종명	어획량

가공 및 예상가격

가 공 방 법	예상 가공비용	예상 가공가격

【별지 제12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총보조사업비^{주1)}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㉑)	지자체 부담금(㉒)		자기부담금(㉓)	합 계(㉔=㉑+㉒+㉓)	보조금비율(㉕=㉑÷㉔)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㉖)	전기이월분		집행액계(㉗=㉖+㉘)	수익금		
	전기이월액(㉙)	집행액(㉚)		발생액(㉛)	반환액(㉜)	미반환액(㉝=㉛-㉜)
보조사업비 총액㉑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㉖) + 전기이월분 집행액(㉘)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㉞=㉖-㉗)	전기이월잔액(㉟=㉙-㉚)	집행잔액(㊱=㉞+㉟)	발생이자(㊲)	차기 이월액(㊳)
보조사업비 총액㉑ - 당기분 집행액(㉖)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㉙) - 전기 집행액(㉚)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㊴=㉟+㊲+㊳-㊳)	보조금 반환액 ^{주4)} (㊵)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주4)} (㊶)	자기부담금 정산잔액(㊷=㊴-㊵-㊶)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㊲)×㉕)-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㊴×㉕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 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㊲)×㉖÷㉑)-지자체 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㊴×㉖÷㉑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 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 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13호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①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집행계획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② 보조사업비 변동 현황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집행계획	사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별지 제14호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계좌이체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현금지급
		보 조 사 업 비 카드
	소계		xxx,xxx		
.....		
합 계			x,xxx,xxx		

